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가합54988(본소), 2018가합55196(반소) 판결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석윤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변론 종결2020. 10. 23.

판결 선고2020. 11.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822,753원 및 그중 200,0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78,812,753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각 2020.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87,406,554원

및 그중 200,01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7,396,554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73,241,937원 및 그중 388,291,307원에 대하여는 반소장(조정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4,950,630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 원고를 원사업자, 피고를 수급사업자로 하여 원고가 C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FASIGN 테라코타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53,000,000원(공급가액 1,230,000,000원, 부가가치세 123,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20.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턴키 방식의 건설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지체상금률: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0.1%

건설공사 시공계약서(본문)

제27조(지체상금 등)

① 피고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공참여자 대금 직불 동의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최고통지 없이 피고의 당해 미수령 하도급
기성대가에서 해당 금액을 원고가 피고의 시공참여자인 근로자·장비임대업자·자재납품업자 및 기타
시공참여자(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원고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액은 지불해당액만큼 피고의 기성 부분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각 기일까지 지급이 안 된 경우
2. 피고가 시공참여자와의 대금지급 분규로 당해 공사의 공정에 중대한 차질 및 원고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3. 피고의 부도, 파산, 폐업, 합병, 해산,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시공참여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7. 10. 31.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별도로 반소사건의 서증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본소 사건의 서증이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기존 공사대금 외에 원고가 2017. 5. 8.경 피고에게 자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388,291,307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416,878,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3,241,937원(= 기존
공사대금 1,353,000,000원 + 자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10,000,000원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27,120,437원 - 기지급 공사대금 1,416,87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 공사대금 반환채권, 지체상금 채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3,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35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대금 110,000,000원 부분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추가 비용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100,000,000원을 원고와 D이 50,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100,000,000원 전부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D이 부담하기로 한 50,000,000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부분 을 제8, 9호증 및 반소 사건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정보고를 보낸 사실, 위 실정보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 실정보고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이 388,291,30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실정보고에서 증액되는 금액 388,291,307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사대금

1,353,000,000원이 아니라 2,010,020,530원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발주자인 D 사이에서의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인 원고와 발주자인 D 사이에 그러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이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1,403,0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353,000,000원 +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50,000,000원)이 되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위 1,403,000,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1,416,979,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상계 항변은 수동채권인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 이전에 발생한 기성금 등을 지급한 부분 가) 기성금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에게 기성금 합계 859,61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기성금으로 합계 862,36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859,61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직불 노무비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인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의 노무비로 합계 642,411,553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10월분 노무비 115,026,173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금액은 합계 642,411,553원이 된다.

다) 식대 및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원고는 식대 및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으로 합계 37,965,000원(= E식당 식대 33,000,000원 + F 식대 2,600,000원 +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2,36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식당에 식대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에 식대 명목으로 2,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7. 9. 30.자로 F가 피고에게 합계 2,622,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납품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F의 G은 2017. 8. 28.부터 2017. 10. 10.까지의 식대 2,6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입금되면 더 이상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영수 및 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F에 위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2,365,000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D이 2017. 5. 25.경 원고에게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2,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D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공사 중단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직접 지급한 금액은 식대 합계 35,600,000원(= E식당 33,000,000원 + F 2,600,000원)이 된다.

라)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 이전에 발생한 기성금 등을 지급한 금액은 합계 1,537,628,553원(= 기성금 합계 859,617,000원 + 직불 노무비 합계 642,411,553원 + 식대 합계 35,600,000원)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합계 1,403,000,000원인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과 지급한 134,628,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 발생한 노무비 등을 지급한 부분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2017. 11.부터 2017. 12.까지의 노무비 105,516,201원과 자재비 및 숙박비 46,215,22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주장을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보더라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데,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7. 9. 30.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2017. 10. 31.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의 종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는 C공사의 시공사인 D도 2017. 12.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의회동 배면 테라코타 마감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일보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테라코타 관련 작업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21.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공사를 한 기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공사 완성일인 2017. 12. 21.이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1. 15.경 공사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선행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피고의 공사 착공이 늦어졌으며 우천, 강풍의 악천후로 인하여 총 48일의 작업이 지체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지체상금 액수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약정 공사기간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공사가 완성된 2017. 12. 21.까지이므로 지체일수는 82일이 되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110,946,000원(= 계약금액 1,353,000,000원 × 지체상금률 0.1% × 82일)이 된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와 추가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 원고가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공사 중단 이후에 소요된 기간이 적정한지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77,662,200원(= 110,946,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완성된 공사 부분에 아래 표 '항목'란 기재와 같은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66,53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6,5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나,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본관 정면 2~7F 10열 좌 우측 누수	568,000원
3	본관 우측면 2~3F A열~J열 전체 누수	317,000원
4	본관 우측면 3F~옥탑층 A열~J열 전체 누수	2,248,000원
6	본관 좌측면 3F~옥탑층 G열~B열 전체 누수	12,889,000원
8	본관 좌측면 전체 패널 중공 노출	37,286,000원
9	의회동 전체 창호주변 패널 중공 노출(창호하단부 시트 미 돌출 포함)	13,224,000원
합계	66,532,000원	

2) 개별 하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테라코타 패널을 위해 설치되는 지지틀의 용접 시공이 불량한 하자(하자 번호 12. 본관·의회 돌출·삼각 전체 용접 시공불량)가 발생하였고, 해당 항목의 보수비로는 87,001,000원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해당 부분의 용접은 일부 용접(점용접 형태)된 것으로 확인되나 외장에 시공된 테라코타의 지지틀에 접합 및 내력의 저하로 볼 수 있는 탈락된 마감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지지틀 용접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점, 원고는 구조계산서에 용접 방법과 부위가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구조계산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항목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회동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의 관리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의회동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7. 10. 31.경 이전부터 의회동에서 테라코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위 항목 하자를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8,822,753원(= 초과 지급 공사대금 134,628,553원 + 지체상금 77,662,200원 + 하자보수비 66,532,000원) 및 그중 소장에서 청구한 200,01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5. 19.부터, 나머지 78,812,753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구세희

판사유동균